

목 차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결과

2023. 10.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I. 안전감찰 개요	1
II. 안전관리 체계	2
III. 안전감찰 결과	6
1. 2019년 실태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7
2.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추가)	9
IV. 향후 계획	16
[붙임] 지적사항 일람표	17

I 안전감찰 개요

□ 추진배경

- 2023년도 「안전감찰 협의회」 운영계획에 따라 기존 ‘감찰 추진사례’ 중 안전 강화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감찰
- ▲ 2019년 실시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 문체부 소관 공연장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 실태점검으로 사후관리 등 안전강화

< 2019년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

- (기간) 2019. 2. 18. ~ 2019. 3. 8.
- (대상)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8개소) 및 공연장
- (감찰반) 감사담당관실 2, 공연전통예술과 1
- (주요내용) 공연장 무대시설의 사고예방 등 공연법 및 관련규정 점검, 안전진단기관의 업무 및 공연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 기간 및 대상

- (기간) 2023. 8. 7. ~ 8. 17.
 - (인원) 총 3명(감사담당관실)
 - (대상)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 소관부서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문화시설 내 8개 공연장*
- * 국립국악원(1), 국립민속국악원(2), 국립남도국악원(1), 국립부산국악원(2), 국립중앙극장(2)

□ 중점 감찰사항

기존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2019년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및 적절성 확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 일반실태(추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재해대처계획 신고,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안전관리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II 안전관리 체계

□ 공연장 현황

- 전국 공연장 등록 현황: 총 1,353개소
- * 공공 683개(50.5%), 민간 670개(49.5%) / 2023. 9월말 기준

□ 안전사고 현황

- 2014~2018.6월 기간 동안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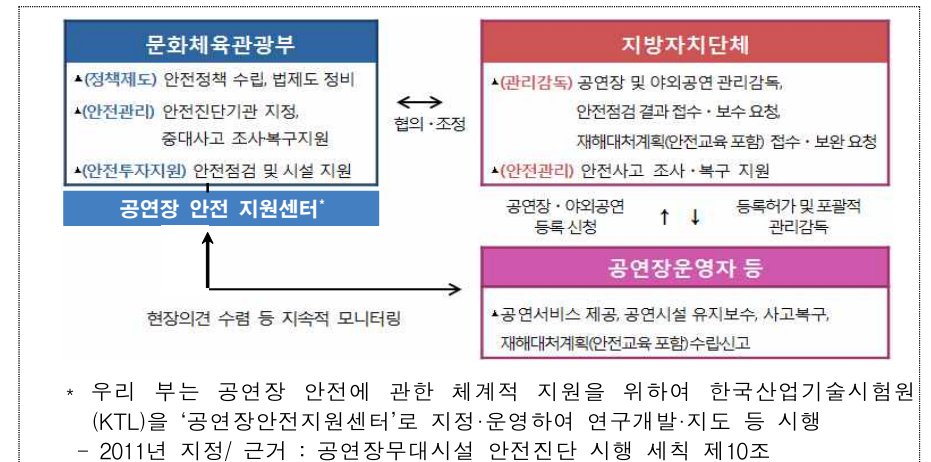
구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계	3.2	10.4	2	28	4	9	6	4	1	1	4	10	5	10	2	6	0	0	6	6
공연사고*	2.6	3	1	1	4	9	5	2	1	1	4	10	3	4	2	6	0	0	4	4
관람객 사고**	0.6	7.4	1	27	0	0	1	2	0	0	0	0	2	6	0	0	0	0	2	2

* (공연사고) 무대기계의 고장·오작동 등으로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사고

** (관람객 사고) 군중 압사 등 무대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 기관별 협업 관계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공연장운영자 등 각 기관이 공연장 관련 업무를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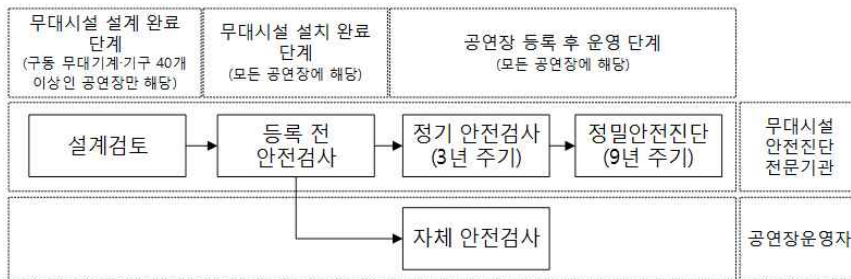


□ 안전 관련 규정

구분	관련 조항	규정 내용	의무 주체
안전성검사	○ 공연법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연장 운영자
		○ 공연장 운영자는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연장 운영자
		○ 공연장운영자는 등록한 날부터 9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경우, 정기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을 받아야 한다.	공연장 운영자
안전관리 조직·교육	○ 공연법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제11조의4(안전교육)	○ 공연장운영자는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 을 두어야 한다. ○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연장 운영자
안전관리비	○ 공연법 제11조2(안전관리비)	○ 공연장운영자 등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을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공연장 운영자
재해예방 조치	○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 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연장 운영자 · 지자체

□ 안전검사 등 관리 체계

○ 무대시설 안전검사 등의 체계



* 공연법에 따른 주기별 안전진단 등 시행→공연장 운영자가 진단 등의 시기가 도래한 경우 지정기관에 검사의뢰 및 견적비교 → 경쟁입찰 등을 통해 안전진단기관을 선정, 검사 시행

○ (안전검사 등의 수검 대상) *공연법 제12조 관련

구분	대상	수검 시기	내용
설계검토	무대기계·기구 수 40개 이상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 전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계 단계에서 이론적 안전성을 검토하는 예방적 안전진단
등록 전 안전검사	모든 공연장	공연장 등록 전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등록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무대기계·기구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진단
정기 안전검사	모든 공연장	공연장 등록 후 3년마다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	모든 공연장	등록후 9년째 되는 해, 이후 9년마다 실시 (정기안전검사 대체)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정밀안전진단
자체 안전검사	모든 공연장	매년	○ 공연장운영자가 자체 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안전진단

- 무대시설 규모(구동 무대기계·기구 수)에 따른 안전검사 등의 구분

구동 무대 기계·기구 수	안전진단 구분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자체 안전검사
0~40개 미만	×	○	○	○	○
40개 이상	○	○	○	○	○

○ (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 *공연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관련

구분	대상	구성	교육 시간
등록 공연장	객석수 500석 이상 1천석 미만	안전총괄책임자	1명 이상 1회/2년, 4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1회/2년, 8시간 이상
공연장외 공연	객석수 1천석 이상	안전총괄책임자	1명 이상 1회/2년, 4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1회/2년, 8시간 이상
	관람예상인원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안전총괄책임자	1명 이상 1회/2년, 4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1회/2년, 8시간 이상
관람예상인원 3천명 이상	안전총괄책임자	1명 이상 1회/2년, 4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1회/2년, 8시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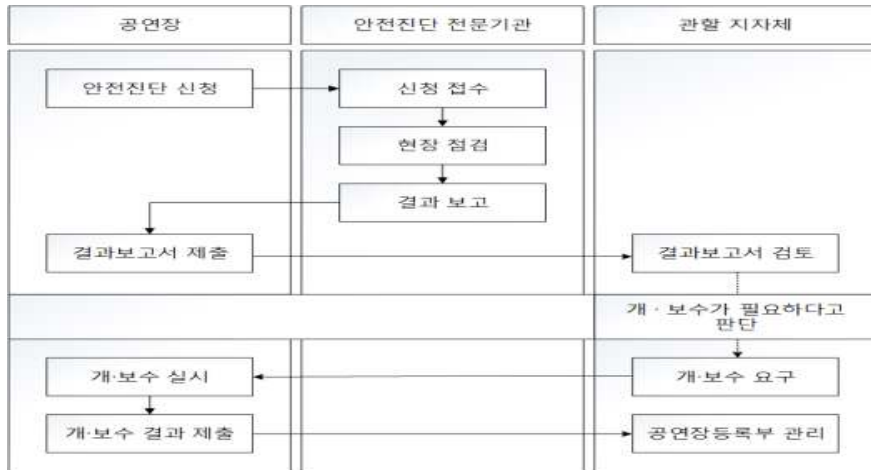
○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공연법 제11조의2 관련

구분	대상	안전관리비 산정 비율
등록 공연장	객석수 500석 이상	공연장 운영비의 1% 이상
공연장외 공연	관람예상인원 1천 명 이상 3천 명 미만	공연비용의 1.15% 이상
	관람예상인원 3천 명 이상	공연비용의 1.21% 이상

○ (재해대처계획 신고) *공연법 제11조 관련

구분	대상	내용	행정절차
등록 공연장	모든 공연장	①관리자의 임무관리조직 ②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처 ③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④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	재해대처계획 신고(공연장운영자 등) →접수 및 소방서 통보(지자체)
공연장의 공연	관람예상인원 1천 명 이상인 공연을 하려는 자	위의 내용에 아래 내용 추가 ⑤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⑥공연계획서	*지자체 필요시 보완 요구 가능

※ 안전진단 업무 흐름도



III 안전감찰 결과

총 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완료 하였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행적 행태로 인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바, 이번 실태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적극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
주요감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실태점검 후속조치)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필요 등의 지적사항이 모두 이행됨을 확인* * 사후 조치 규정, 재해예방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적인 실태점검 방안(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등 (이행실태 추가 점검) 공연장에 설치된 소화설비(소화기) 점검 누락, 관람자의 피난안내 부적정, 공연장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소홀,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항목 일부 누락, 무대장치와 상관없는 적재물 방치 등 현장관리 미흡 등을 확인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 통보 * 이번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개선토록 ‘주의·통보’ 조치하고, 향후 종합감사 등에서 공연장 안전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 점검결과 전파 및 교육 등을 통해 안전인식 개선 유도

지적사항 총괄

합 계 (추가점검)	2019년 실태점검 후속조치		이행실태 추가 점검	
	통보	완료 (법령개정)	주의	통보
27	5건	5건	20	7

1 2019년 실태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1-1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사후 조치 관련 규정 미비

- (지적사항)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 조치 규정 마련(통보)
- (개선내용) 「공연법」 일부 개정('22.1.18.)으로 사고발생에 따른 사후 조치 규정 마련(완료)

<공연법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본조신설('22.1.18.)>

「공연법」 제11조의6 제1항에 따라 인명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안전교육 관련 규정 미흡

- (지적사항) 안전관리조직구성 세부요건 및 조직구성, 교육 의무 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규정 마련(통보)
- (개선내용) 「공연법」 일부 개정('22.1.18.)으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완료)
* 안전관리조직의 자격요건, 업무의 범위, 역할 및 책임 등 규정반영(법령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9.12.~'20.3.) 및 결과 반영 종결

<공연법 제33조(행정처분) *일부개정('22.1.18.)>

「공연법」 제33조(행정처분)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3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지정·지원에 대한 법률상 근거 미비

- (지적사항) 법령상 근거 두는 방안 강구(통보)
- (개선내용) 「공연법」 일부 개정('22.1.18.)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관련 규정 마련(완료)

<공연법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본조신설('22.1.18.)>

「공연법」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4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 수행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공연장 안전관리(재해대처계획,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구성 등) 등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관리하는 방안 마련(통보)
- (개선내용) 「공연법」 일부 개정('22.1.18.)으로 구축 중에 있는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으로 무대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통합관리(완료)

<공연법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본조신설('22.1.18.)>

「공연법」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에 따라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수료 현황 등을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5 안전진단기관 지정 요건 관련 규정 미흡

- (지적사항) 안전진단기관 기술인력 지정요건 법령 개정(통보)
- (개선내용) 안전진단기관의 기술인력 지정요건 법령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결과 반영 종결(완료)
* 법령개정 연구용역 추진('19.12.~'20.3.)

2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추가)

□ 점검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문화시설 내 공연장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 실태 점검
- 5개 기관, 8개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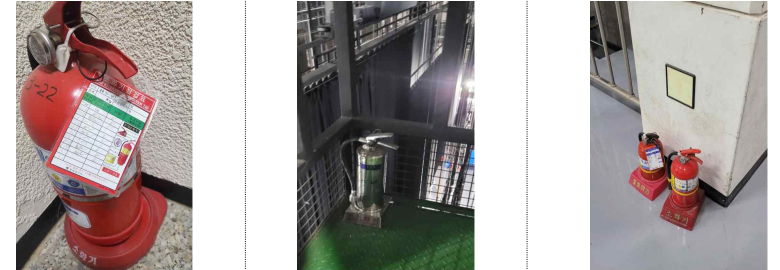
연번	기관명	시설규모			공연장 현황		
		준공년도	연면적(m ²)	지하/지상	공연장	객석수(석)	사용승인(년)
1	국립국악원	1987	42,667	6층/4층	예약당	658	1996
2	국립민속국악원	1996	14,602	2층/3층	예원당	560	1996
3					예음헌	100	1996
4	국립남도국악원	2004	12,951	1층/3층	진악당	520	2004
5	국립부산국악원	2008	20,992	2층/4층	연악당	686	2008
6					예지당	276	2008
7	국립중앙극장	1973	51,050	1층/5층	달오름극장	510	1973
8					하늘극장	627	2002

□ 점검결과

2-1 공연장 소방시설 점검 소홀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공연장)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 공연장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점검결과) 공연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소화기)에 대해 정기적으로 종합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설치된 일부 소화기에 대해 점검을 누락하고 소방시설 점검표를 부착·관리하지 않는 등 자체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지적사례



<소화기 점검을 누락하거나 점검표를 미부착 하는 등 관리소홀>

조치의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연장 소방시설을 점검함에 있어 소화기 점검을 누락하는 등 공연장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 “주의” 요구(기관주의)

(대상기관) 국립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2-2 공연장 관람자 피난안내 부적정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연법」 제11조의5 및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1*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 출입구 인근의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함

* 피난안내도에 포함해야 할 내용

- 1)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하강기·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 2)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3) 소방시설(소화기·소화전·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심장박동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 4)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 5) 비상 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 (점검결과) ① 피난안내도를 출입구가 아닌 관람객이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 비치하였고(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

부산국악원, 국립중앙극장), ②현장과 다르게 시설배치도를 기재하거나(국립부산국악원), ③피난동선을 잘못 기재하였고(국립민속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④피난안내도에 포함해야 할 소방시설 및 피난안내도 위치를 누락하여 설치함(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중앙극장)



조치의견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에 설치하는 피난안내도에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는 등 피난안내도를 부적정하게 설치한 기관에 대해 “주의” 요구(기관주의)

(대상기관)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국립중앙극장

2-3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신고 미흡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연법」 제11조에 따르면 공연장은 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 등 내용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점검결과) ①재해대처계획 신고 기한(매년 12월)을 넘겨 신고하였고(국립남도국악원), ②안전관리조직 등 변경내용을 미반영하는

등 재해대처계획을 부적정하게 신고함(국립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중앙극장)

조치의견

→ 「공연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을 부적정하게 신고한 기관에 대해 “주의” 요구(기관주의)

(대상기관) 국립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중앙극장

2-4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소홀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연법」 제11조의4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르면, 안전총괄책임자는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는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점검결과) ①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있는 안전교육을 2시간만 이수하였고, ②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이수를 하지 않거나 8시간 미만의 안전교육만 받음

* (교육이수) 국립민속국악원 2시간

** (교육이수) 국립국악원 4시간, 국립민속국악원 미이수, 국립남도국악원 4시간, 국립남도국악원(2명) 미이수

조치의견

「공연법」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교육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주의” 요구(기관주의)

(대상기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2-5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검사 계획 미수립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연법」 제12조제4항 및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9조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자체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점검결과) 공연장 자체 안전검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안전검사를 실시함

조치의견

「공연법」에 따라 매년 자체 안전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방안 마련(통보)**

(대상기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2-6 공연장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항목 누락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연법」 제12조제4항 및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9조에 따르면 자체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자는 [별표4]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1호서식]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야 함
- (점검결과) 공연장 자체 안전검사를 수행하면서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 항목*을 일부 누락하여 실시하고 규정에 따른 [별지 1호서식]을 활용하여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음

* 누락항목 : 드럼, 철골프레임류, 그리드 및 점검통로, 무대바닥 및 프레임 등

조치의견

「공연법」에 따라 안전검사 항목을 누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부적절하게 실시한 기관에 대해 **“주의” 요구(기관주의)**

(대상기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국립중앙극장

2-7 공연장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소홀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9조 및 [별표4]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공연장 자체 안전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기준*에 따라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감속기 및 기어박스는 외관상 균열, 부식, 파손 등 손상이 없고 유량은 적정하며, 오염 및 누유현상이 없는지 여부를 검사

- (점검결과) 공연장 자체 안전검사를 수행하면서 무대 스테이지 리프트 기계장비의 오일 누유가 육안으로 확인됨에도 이를 자체 검사 결과에 작성하지 않는 등 점검결과에 따른 이상유무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조치의견

「공연법」에 따라 자체 안전검사를 소홀하게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 **“주의” 요구(기관주의)**

(대상기관)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2-8 공연장 현장관리 미흡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연법」 제11조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 진단하고 위험사고 요인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점검결과) 공연장 무대상부 켈러리에 무대장치와 상관없는 공연소품 및 상자들이 적재되어 있어, 작업 시 물품 낙하사고의 위험이 있음

* 지적사례



<공연장 무대상부 등 물품 적재 현장>

조치의견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상부 갤러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진단하여 무대상부 낙하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통보)**

(대상기관) 국립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IV 향후 계획

- 이행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처분 요구
 - 공연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향후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토록 “주의”(기관주의) 요구
 - 안전검사 계획 수립, 무대상부 낙상사고 방지 등을 위한 예방조치 등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공연장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등과 주요 감사결과를 공유하여 **재발 방지 및 안전문화 확산 도모**

구분	연번	지적사항	조치의견	관계기관
1.2019년 실태점검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1-1	■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사후 조치 관련 규정 미비	완료 (법령개정)	문체부
	1-2	■ 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안전교육 관련 규정 미비	완료 (법령개정)	문체부
	1-3	■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지정·지원에 대한 법률상 근거 미비	완료 (법령개정)	문체부
	1-4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 부적정	완료 (법령개정)	문체부
	1-5	■ 안전진단기관 지정 요건 관련 규정 미흡	완료 (법령개정)	문체부
2.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추가)	2-1	■ 공연장 소방시설 점검 소홀	기관주의	3개 기관
	2-2	■ 공연장 관람자 피난안내 부적정	기관주의	4개 기관
	2-3	■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신고 미흡	기관주의	3개 기관
	2-4	■ 공연장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소홀	기관주의	3개 기관
	2-5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검사 계획 미수립	통보	4개 기관
	2-6	■ 공연장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항목 누락	기관주의	5개 기관
	2-7	■ 공연장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소홀	기관주의	2개 기관
	2-8	■ 공연장 현장관리 미흡	통보	3개 기관